

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5
----------	-----

발의일시: 2008. 1. 9.
발의자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조정(안 제3조)
 - 월 240만원 → 월 215만 9천원으로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

4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240만원”을 “215만 9천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의원에게 월 <u>240만 원</u>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.</p> <p>②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. 다만,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.....월 <u>215만 9천원</u>....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